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나20386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중중

변 론 종결 2016. 10. 6.

판결 선고 2016. 11. 3.

제 1 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4065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896㎡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원고는 1975.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당시 피고 종중은 존재하지 않았고, 1999. 2. 22. 총회 개최시에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6. 25 전쟁으로 멸실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 2. 12. 소유자를 원고의 4대조 망 F로 하여 토지대장이 복구되었으나 1975. 5. 28. 오류정정에 의하여 소유자란이 피고 종중으로 정정 기재되었고, 1975. 7. 5.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러한 경위와 피고 종중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종중은 회칙(을 제1호증)이 의결된 1999. 2. 이전인 이 사건 등기 무렵에도 그 실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갑 제3호증, 을제5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한규현, 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